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나. 개인별이수현황

다.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 출 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소속 학과사무실

※ 다전공자는 주전공과 다전공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에서 수합 후 교직지원센터 제출
출원자격 표시방법

학 과(전 공)	출 원 자 격	비 고
국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영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육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	
수학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불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프랑스어)	
일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식품영양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조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출원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원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상명대학(교) 대학원	*** 과(전공)	[] 졸업 [] 수료
	연수명	-		
	경력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나.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영양사면허증사본(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라.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간호사면허증사본, 영양사면허증사본, 국가기술자격증사본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학과:

표시과목:

연번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지정 교과목명	일치근거 ※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1			
2			
3			
4			
5			
6			
7			
8			

작성자 학과장 성명 (인)
 확인자 학장 성명 (인)

<+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바람.>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대상자	소속		학번		성명	
이수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치증명 교직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치근거(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 ※ 증빙자료 첨부						
2022. . . . 이수과목 담당교수 확인 _____ (인) 교직과목운영 교육학과 학과장 확인 _____ (인) 사범대학장 확인 _____ (인)						

<+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바람.>